
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9-32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7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,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,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,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, 중소기업육성기금, 도시정비기금,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주요내용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
 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205,041,727천원 대비 23.43% 감액한 157,003,983천원으로 계획 변경함.
-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
 -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130,000천원 대비 23.07% 감액한 100,000천원으로 계획 변경함.
 -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1,407천원 대비 72.85% 증액한 2,432천원으로 계획 변경함.
-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
 -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16,326천원 대비 67.07% 증액한 27,276천원으로 계획 변경함.

○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

-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360,000천원 대비 37.83% 감액한 223,800천원으로 계획 변경함.
-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364,435천원 대비 27.58% 감액한 263,913천원으로 계획 변경함.

○ 중소기업육성기금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6,200,000천원 대비 30.24% 감액한 4,325,000천원으로 계획 변경함.

○ 도시정비기금

- 도시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(시설비)을 기정액 1,870,000천원 대비 3.74% 감액한 1,800,000천원으로 계획 변경함.

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

-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697,440천원 대비 159.17% 증액한 1,807,589천원으로 계획 변경함.

□ 관계자료

- 2023년도 제4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변경(안) : [붙임 1]
- 2023년도 제4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 : [붙임 2]
- 2023년도 제4차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 : [붙임 3]
- 2023년도 제4차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운용계획변경(안) : [붙임 4]
- 2023년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 : [붙임 5]
- 2023년도 제4차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 : [붙임 6]
- 2023년도 제4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 : [붙임 7]
-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: [붙임 8]

[붙임 1]

**2023년도 제4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
운용계획 변경(안)**

-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등 13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 내역을 반영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총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.

1. 기금 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말 조성액 (가)		2023년도 운용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라)
		수입(나)	지출(다)	증감 (라) = (나)-(다)	
기정(A)	193,260,070	11,781,657	20,567,118	△8,785,461	184,474,609
변경(B)	193,260,070	13,743,913	18,900,443	△5,156,530	188,103,540
증감(B-A)	-	1,962,256	△1,666,675	3,628,931	3,628,931

※ 수입 : 예수금, 이자수입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제외)

※ 지출 :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제외)

2. 자금수지 총괄

(단위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
항 목	기정액	변경액	증 감	항 목	기정액	변경액	증 감
합 계	205,041,727	157,003,983	△48,037,744	합 계	205,041,727	157,003,983	△48,037,744
예치금 회 수	193,260,070	143,260,070	△50,000,000	예치금	184,474,609	138,103,540	△46,371,069
이자수입	2,982,881	3,450,009	467,128	예수금 원리금상환	20,567,118	18,900,443	△1,666,675
예수금수입	8,048,776	9,543,904	1,495,128				
예탁금 이자수입	750,000	750,000	-				

※ 예치금회수 및 예치금 항목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500억원(2021.12.16.) 분리 기재. 기금조성액 변동 없음.

○ 항목별 용어 설명

▷ 수입

- 예치금회수 : 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
- 예수금 :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서,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예탁금과 일치
- 이자수입 : 통합계정 예치금에 대한 2023년도 이자수입
- 예탁금이자수입 : 일반회계로의 예탁금(용자)에 대한 이자수입

▷ 지출

- 예치금 :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
- 예수금원리금상환 :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

○ 수입 계획 변경 내용

▷ 예치금 회수

- 일반회계 예탁금 500억원 분리 기재 : $\Delta 50,000,000$ 천원

▷ 예수금

- 개별 기금의 예탁금 변경액 : 1,495,128천원

▷ 이자수입

- 개별 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변경액 : 467,128천원

○ 지출 계획 변경 내용

▷ 예치금

-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예탁금 500억원 분리 기재 : $\Delta 46,371,069$ 천원

▷ 예수금원리금상환

- 개별 기금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탁금 원금회수액 : $\Delta 1,666,675$ 천원

【붙임 2】
2023년도 제4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**기금운용연황**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말 조성액 (가)		2023년도 운용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라)
		수입(나)	지출(다)	증감 (라) = (나)-(다)	
기정(A)	201,061	1,407	130,000	△128,593	72,468
변경(B)	201,061	2,432	100,000	△97,568	103,493
증감(B-A)	-	1,025	△30,000	31,025	31,025

※ 수입 : 전입금,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)
 ※ 지출 :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)

○ **수입계획**

(단위: 천원)

구분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131,407	102,432	△28,975	
전 입 금	-	-	-	
예탁금 원금회수	130,000	100,000	△30,000	
이자수입	1,407	2,432	1,025	

○ **지출계획**

(단위: 천원)

구분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131,407	102,432	△28,975	
비용자성사업비	130,000	100,000	△30,000	
예 탁 금	1,407	2,432	1,025	

2023년도 제4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「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 :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안산시민 및 그 가족
- 사업내용
 - 사)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급
 - 중대 범죄피해자 발생 시 시 직권 지원

□ 계획 변경사항

▶ 기금수입계획 변경

- 예탁금원금회수 : (경정) 100,000천원 - (기정) 130,000천원 = Δ 30,000천원
 - 중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 직권지원금 미지출에 따른 예탁금원금회수 삭감
- 이자수입 : (경정) 2,432천원 - (기정) 1,407천원 = 1,025천원
 - 이자수입 예상액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변경

▶ 기금지출계획 변경

- 비용자성사업비 : (경정) 100,000천원 - (기정) 130,000천원 - Δ 30,000천원
 - 시 직권 지원이 필요한 중대 범죄피해자 미발생에 따른 사업비 삭감
- 예탁금 : (경정) 2,432천원 - (기정) 1,407천원 = 1,025천원
 - 이자수입 예상액 변동에 따른 예탁금 변경

□ 양우계획

- 2028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 조성 달성
- 사)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급 : 2024. 2.
- 중대범죄피해자에 대한 시 직권 지원 : 발생 시

[붙임 3]

2023년도 제4차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기금운용연황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말 조성액 (가)		2023년도 운용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라)
		수입(나)	지출(다)	증감 (라) = (나)-(다)	
기정(A)	1,232,005	16,326		16,326	1,248,331
변경(B)	1,232,005	27,276		27,276	1,259,281
증감(B-A)	-	10,950		10,950	10,950

※ 수입 : 전입금,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)
 ※ 지출 :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)

○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구 분 예산과목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16,326	27,276	10,950	
전 입 금				
보 조 금				
예탁금 원금회수				
이자수입	16,326	27,276	10,950	

○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구 분 예산과목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16,326	27,276	10,950	
비용자성사업비				
융자성사업비				
예 탁 금	16,326	27,276	10,950	
기타지출				

2023년도 제4차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-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을 조성·운용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설치근거 :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
- 설치목적 :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
- (최초)설치년도 : 2019년
- 재 원 : 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의 수익금, 그 밖에 결산상 잉여금 등 수익금
- 사업내용
 - 문화·체육·학술·경제 등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
 - 시와 북한 도시간의 교류협력 추진
 -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하여 개최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 연구
 - 평화통일교육
 -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계획 변경사항

▶ 기금수입계획 변경

(단위: 천원)

사업명(산출내역)	수입액		증감	사유
	기정	경정		
합계	16,326	27,276	10,950	
이자수입	16,326	27,276	10,950	당초 계상한 이자 변동

□ 양우계획

- 남북관계 상황전개에 따라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 추진

[붙임 4]

2023년도 제4차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운용계획 변경(안)

- 사업비 불용액 및 융자금회수수입 감액, 이자수입 변경 등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관련근거 :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사업기간 : 2023. 1월 ~ 12월
- 사업내용 :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자활사업지원 등

□ 계획 변경사항

▶ 기금수입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 \ 구분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724,435	487,713	△236,722	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255,000	123,000	△132,000	• 연장계약으로 융자금회수 감액
예탁금원금회수	360,000	223,800	△136,200	• 사업보류로 비용자사업비 감액(-81,200천원) 및 융자사업비감액(-55,000천원)
(예탁금)이자수입	92,435	103,913	11,478	• 예탁금 이자증액
그외수입	17,000	37,000	20,000	• 자활사업단 해체에 따른 매출적립금 반납

▶ 기금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 \ 구분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724,435	487,713	△236,722	
비용자성사업비	240,000	158,800	△81,200	인건비 및 사업비 등 감액
융자성사업비	120,000	65,000	△55,000	전세점포임대 융자금 감액
예탁금	364,435	263,913	△100,522	-연장계약으로 인해 보증금회수 감액 (-132,000천원), -예탁금 이자증액 (+11,478천원) -그 외수입 증액(+20,000천원)

▶ 기금수입계획 변경 : 감) 236,722천원

○ 용자금회수(이자포함) : 감) 132,000천원

→ 전세점포임대 연장계약으로 인한 용자금회수수입 감소

[경정] 123,000천원 - [기정] 255,000천원 = △132,000천원

○ 예탁금원금회수 : 감) 136,200천원

→ 사업비 지출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(3건) 삭감에 따른 예탁금원금회수수입 감소

[경정] 223,800천원 - [기정] 360,000천원 = △136,200천원

1.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(2개소) : 58,800천원(△31,200천원)

☞ 지출잔액(1,200천원) 삭감 및 신규자활기업 창업보류로 인한 미집행 인건비 (30,000천원)삭감

2. 자활근로사업장 시설보강비 지원(2개소) : 100,000천원(△50,000천원)

☞ 신규사업 추진보류로 인한 미집행 사업비(50,000천원) 삭감

3. 자활근로사업장 전세점포임대보증금 지원 : 15,000천원(△55,000천원)

☞ 지출잔액(5,000천원) 삭감 및 신규자활기업 창업보류로 인한 미집행 용자사업비 (50,000천원) 삭감

4. 생활안정자금 지원 : 50,000천원(-)

○ 이자수입 : 증) 11,478천원

→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변경

[경정] 103,913천원 - [기정] 92,435천원 = 증11,478천원

○ 그 외수입 : 증) 20,000천원

→ 자활사업단 해체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매출적립금(창업자금)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 증가

[경정] 37,000천원 - [기정] 17,000천원 = 증20,000천원

▶ 기금지출계획 변경 : 감) 236,722천원

○ 비용자성사업비 : 감) 81,200천원

→ 사업비 지출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(2건) 삭감에 따른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감소

[경정] 158,800천원 - [기정] 240,000천원 = △81,200천원

1.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(2개소) : 58,800천원

☞ 지출잔액(1,200천원) 삭감 및 신규 자활기업 창업보류로 인한 미집행 인건비 (30,000천원)삭감

[경정 58,800천원 - 기정 90,000천원 = △31,200천원]

2. 자활근로사업장 시설보강비 지원(2개소) : 100,000천원

☞ 신규사업 추진보류로 인한 미집행 사업비 (50,000천원) 삭감

[경정 100,000천원 - 기정 150,000천원 = △50,000천원]

○ 용자성사업비 : 감) 55,000천원

→ 자활사업지원금 용자 기금사업비(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) 지출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(1건) 삭감에 따른 용자성사업비 지출 감소

[경정] 65,000천원 - [기정] 120,000천원 = △55,000천원

1. 자활근로사업장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(1개소) : 15,000천원

☞ 지출잔액(5,000천원) 삭감 및 신규자활기업 창업보류로 인한 미집행 용자사업비 (50,000천원) 삭감

[경정 15,000천원 - 기정 70,000천원 = △55,000천원]

2. 생활안정자금 용자 기금사업비 : 50,000천원(-)

○ 예탁금 : 감) 100,522천원

→ 용자금회수수입, 예탁금이자수입, 그 외수입 변경에 따른 예탁금 변경

[경정] 263,913천원 - [기정] 364,435원 = △100,522천원

[붙임 5]

2023년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**기금운용연황**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말 조성액 (가)		2023년도 운용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라)
		수입(나)	지출(다)	증감 (라) = (나)-(다)	
기정(A)	103,980,823	4,046,282	6,200,000	△2,153,718	101,827,105
변경(B)	103,980,823	4,259,140	4,325,000	△65,860	103,914,963
증감(B-A)	-	212,858	△1,875,000	2,087,858	2,087,858

※ 수입 : 전입금,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)

※ 지출 :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)

○ **수입계획**

(단위: 천원)

구 분 예산과목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10,246,282	8,584,140	△1,662,142	
전 입 금	2,000,000	2,000,000	0	
보 조 금				
예탁금 원금회수	6,200,000	4,325,000	△1,875,000	
이자수입	2,046,282	2,259,140	212,858	

○ **지출계획**

(단위: 천원)

구 분 예산과목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10,246,282	8,584,140	△1,662,142	
비용자성사업비	6,200,000	4,325,000	△1,875,000	- 이자차액 보전금 : 3,925,000천원 - 안산 청년창업 펀드 출자 : 400,000천원
용자성사업비				
예 탁 금	4,046,282	4,259,140	212,858	
기타지출				

2023년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- 관내 중소기업에 사업 운영 자금을 적기에 용자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경영난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사업개요

- 기 간 : 2023. 1. 1. ~ 12. 31.
- 규 모 : 1,700억 원(신규지원)
- 대 상 :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·협동조합
- 지원방법 :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이자차액(1.5~1.8%) 보전
- 사 업 비 : 4,200,000천원

□ 계획 변경사항

▶ 기금수입계획 변경

- 예탁금 원금회수 : (경정)4,325,000천원 - (기정)6,200,000천원 = △1,875,000천원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체
- 예탁금 이자 : (경정)2,259,140천원 - (기정)2,046,282천원 = 212,858천원
-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

▶ 기금지출계획 변경

- 비용자성사업비 : (경정)4,325,000천원 - (기정)6,200,000천원 = △1,875,000천원
-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집행 : 3,925,000천원
-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비 집행 : 400,000천원
- 예탁금 : (경정)4,259,140천원 - (기정)4,046,282천원 = 212,858천원
-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이 증액됨에 따라, 내부거래 지출액 증액

□ 양우계약

-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: 2023. 11월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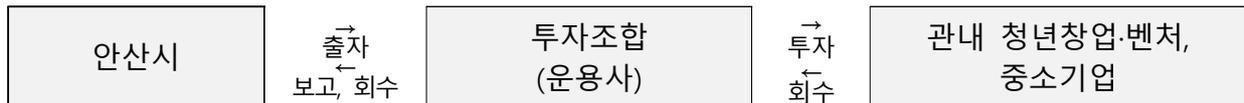
2023년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조성

-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청년창업·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로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「안산시 청년창업펀드 조성」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
- 조성규모 : 250억원(모태펀드 100, 시 20, 민간 130)
- 조성형태 : 중기부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조합형(모태펀드+GP+LP)
- 조성재원 : 국비(모태펀드), 시비(중소기업육성기금), 민간투자금(민간투자자 등)
- 운용기간 : 2023. ~ 2031. (8년, 투자4년+회수4년)
- 투자대상 : 청년창업·벤처기업, 중소기업
- 투자조건 : 안산 소재(이전)기업에 안산시 출자액(20억원)의 2배수 이상 투자
- 운용주체 : 펀드운용사[(정부)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운용사]

<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추진 체계 >



□ 주요내용

- 추진방향
 - 정부자금(모태펀드) 및 민간자금 활용으로 안정적·효율적 운용
 - 기업 투자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원활한 회수로 선순환 구조 마련
 - 공익성(기업성장 지원)과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의 조화
- 출자개요
 - 출자대상 : 한국모태펀드(청년창업, 창업초기, 스케일업·중견도약 분야) 출자사업 선정된 벤처투자조합
 - 출자금액 : 20억원(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)
 - 출자방법 : 정부(모태펀드)가 공모·선정한 투자조합에 출자자로 참여
 - 납부방법 : 수시납(Capital Call)
 - 출자시기 : 2023년 11월 예정

[붙임 6]

2023년도 제4차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**기금운용연황**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말 조성액 (가)		2023년도 운용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라)
		수입(나)	지출(다)	증감 (라) = (나)-(다)	
기정(A)	1,639,463	1,016,302	1,870,000	△853,698	785,765
변경(B)	1,639,463	1,054,659	1,800,000	△745,341	894,122
증감(B-A)	-	38,357	△70,000	108,357	108,357

※ 수입 : 전입금,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)

※ 지출 :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)

○ **수입계획**

(단위: 천원)

구 분 예산과목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2,886,302	2,854,659	△31,643	
전 입 금	1,000,000	1,000,000	0	
보 조 금	-	-	-	
예탁금 원금회수	1,870,000	1,800,000	△70,000	사업비 감액으로 예탁금 원금회수액 감소
이자수입	16,302	54,659	38,357	이자수입 증가

○ **지출계획**

(단위: 천원)

구 분 예산과목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2,886,302	2,854,659	△31,643	
비용자성사업비	1,870,000	1,800,000	△70,000	사업비 감액
용자성사업비	-	-	-	
예 탁 금	1,016,302	1,054,659	38,357	이자수입 증가
기타지출				

2023년도 제4차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-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, 쌈지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: 주택지역 주차장 ·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
- 사업비 : 1,870,000천원 → **1,800,000천원**(△70,000천원)
- 사업내용 :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·쌈지공원·소규모 복지시설 조성 부지 매입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

□ 계약 변경사항

▶ 기금수입계획 변경 : **△31,643천원**

- 예탁금원금회수 : (경정) **1,800,000천원** - (기정) 1,870,000천원 = △70,000천원
- 사업비 감소에 따른 예탁금원금회수액 감소
- 예탁금이자수입 : (경정) **54,659천원** - (기정) 16,302천원 = 38,357천원
-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

▶ 기금지출계획 변경 : **△31,643천원**

- 비용자성사업비 : (경정) **1,800,000천원** - (기정) 1,870,000천원 = △70,000천원
- 상반기 매입하기로 하였던 2필지 소유자가 매도의뢰 취소로 다른 대상지를 선정함에 따라 감정평가액 및 부대비용 감소분 반영
- 예탁금 : (경정) **1,054,659천원** - (기정) 1,016,302천원 = 38,357천원
- 2023년도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예탁금 증가분 반영

□ 양우계약

- 부지매입 추진 건(2필지) 이전등기 : 2023. 12. 중
- 재산관리관 이관(철도교통과) : 2024. 3. 중

2023년도 제4차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□ 2023년 부지매입 현황

대상지	지목	토지 (㎡)	연면적 (㎡)	건축 시기	부지매입비 및 부대비	비고
계					1,800,000	
상록구 실록3길 15 (일동 651-4)	대	263.1	388.8	1994	850,000	매입완료, 등기 진행중
상록구 세류로3길 28-1 (본오동 956-16)	대	261.2	561.8	2001	950,000	감정평가 실시중

- ※ 부대비 1) 공사비 등 :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, 해체용역비, 감리비
 2) 제수수료 등 : 감정수수료, 부동산 중개수수료, 등기대행수수료 등

□ 2023년 기금계획변경

구 분 예산과목	4차계획변경 ①	3차계획변경 ②	당초	최종증감 (①-②)	비 고
비용자성사업비	1,800,000	1,870,000	1,000,000	△70,000	

□ 증감사유

- 상반기 부지매입 추진중 매도자의 매도취소로 새로운 부지 선정에 따른 감정평가액 및 부대비용 감소분 반영(삭감)

[붙임 7]

2023년도 제4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기금운용연황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말 조성액 (가)		2023년도 운용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라)
		수입(나)	지출(다)	증감 (라) = (나)-(다)	
기정(A)	25,065,364	457,073	4,406,021	△3,948,948	21,116,416
변경(B)	25,065,364	1,691,968	4,406,021	△2,714,053	22,351,311
증감(B-A)	-	1,234,895	-	1,234,895	1,234,895

※ 수입 : 전입금,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)

※ 지출 :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)

○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4,987,840	6,097,989	1,110,149	
전 입 금	-	-	-	
보 조 금	-	1,140,000	1,140,000	
예탁금 원금회수	4,530,767	4,406,021	△124,746	
이자수입	457,073	551,968	94,895	

○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기정 예산액	변경 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4,987,840	6,097,989	1,110,149	
비용자성사업비	4,290,400	4,290,400	-	
용자성사업비	-	-	-	
예 탁 금	581,819	1,691,968	1,110,149	
기타지출	115,621	115,621	-	

2023년도 제4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-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. 1. ~ 2023. 12. 31.
- 사업대상 : 안산시 관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미지정된 구역
- 사업내용 : 재건축 안전진단, 정비계획 수립, 기반시설보조금 지원 등

□ 계획 변경사항

▶ 기금수입계획 변경 : 증) 1,110,149천원

○ 보조금 : 증) 1,140,000천원

[경정] 1,140,000천원 - [기정] 0원 = 1,140,000천원

→ 도비보조금 반영에 따른 보조금 수입 증가

1. 재건축 안전진단 (월피연립1구역) : 70,000천원
2. 재건축 안전진단 (성포예술인) : 90,000천원
3. 재건축 안전진단 (성포주공4단지) : 65,000천원
4. 정비구역 지정 (고잔연립4구역 등 3개소) : 415,000천원
6. 정비구역 지정 (현대1차아파트 등 2개소) : 265,000천원

○ 예탁금원금회수 : 감) 124,746천원

[경정] 4,406,021천원 - [기정] 4,530,767천원 = △124,746천원

○ 이자수입 : 증) 94,895천원

[경정] 551,968천원 - [기정] 457,073천원 = 94,895천원

→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변경

▶ 기금지출계획 변경 : 증) 1,110,149천원

○ 비용자성사업비 : 증) 0원

[경정] 4,290,400천원 - [기정] 4,290,400천원 = 0원

→ 도비보조금 반영에 따른 사업비 재원 변경

※ 시비 100% → (도비 50% : 시비 50%)

1. 재건축 안전진단 (월피연립1구역) : 140,000천원

[도비 70,000 : 시비 △70,000]

2. 재건축 안전진단 (성 포 예 술 인) : 180,000천원

[도비 90,000 : 시비 △90,000]

3. 재건축 안전진단 (성포주공4단지) : 130,000천원

[도비 65,000 : 시비 △65,000]

4. 정비구역 지정 (고잔연립4구역 등 3개소) : 830,000천원

[도비 415,000 : 시비 △415,000]

5. 정비구역 지정 (군자주공9단지 등 2개소) : 470,000천원

[도비 235,000 : 시비 △235,000]

6. 정비구역 지정 (현대1차아파트 등 2개소) : 530,000천원

[도비 265,000 : 시비 △265,000]

○ 예탁금 : 증) 1,110,149천원

[경정] 1,691,968천원 - [기정] 581,819원 = 1,110,149천원

□ 양우계획

○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계획적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

○ 노후·불량주택의 재건축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